

제253회충청북도의회정례회  
2006.9.4 ~ 9.15(12일간)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 9. 15.

기획행정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6년 8월 25일  
김환동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8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25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2차기획행정위원회(2006.9.6)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자 : 김환동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의회 참석수당을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타 조례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 낫표붙이기 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변경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06.2.8)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제15조의2에서 제15조의3으로 변경되었음.

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안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개정에 따른 조치

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안 제15조)

-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Ⅲ. 검토보고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심의회 참석수당을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며, 기타 조례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 낫표붙이기 등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명 및 안 제1조, 안 제5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을 법령의 본칙 내에서 인용하는 경우, 법령명칭을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법령명 앞 뒤에 낫표(「」) 사용에 따른 것이며
- 안 제2조 및 안 제4조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것이며
- 안 제15조는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등을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여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생략”

####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
----------	----

발의연월일 : 2006년 8월 25일  
발 의 자 : 김환동·강태원·이필용  
조영재·연만흠·오용식  
송은섭·김법기(8인)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심의회 참석수당을 「충청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며, 기타 조례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 낫표붙이기 등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변경  
(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06.2.8)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제15조의2에서 제15조의3으로 변경되었음.

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안 제2조제2호,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개정에 따른 조치

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안 제15조)

○ 심의회에 출석한 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발췌조례 제 13 호

##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제5조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 조와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 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 ----- --같은법 <u>시행령</u>----- <u>제15조의3</u>----- ----- ----- ----- ----- -----</p>
<p>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회기수당"이라 함은 영 제 15조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을 말한다.</p>	<p>제 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 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p>
<p>3. (생략)</p> <p>제 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p>	<p>3. (현행과 같음)</p> <p>제 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 1. ----- ----- ----- 의정활동비 ----- ----- 2. -----</p>
<p>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p>	<p>2. -----</p>



<p>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에 규정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p>	<p>-----의정활동비----- ----- ----- -----</p>
<p>3. (생략) ② (생략) 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 4호 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 1등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p>	<p>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 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p>
<p>②(생략) 15조(심의회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현행과 같음) 제 15조(심의회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p>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자치법

**第32條의2 (傷害·死亡등의 補償)** ①地方議會議員이 會期中 職務(第53條 但書の 規定에 의하여 開會된 委員會의 職務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한 閉會중의 公務旅行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身體에 傷害를 입거나 死亡한 때와 그 傷害 또는 職務로 인한 疾病으로 死亡한 때에는 補償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補償金의 지급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4.3.16]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의한 금액
2. 여비 :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2.8]

**제15조의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7.1, 1999.12.31, 2006.2.8>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1인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④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7.6][제15조의2에서 이동 <2006.2.8>]